



## 이용규칙

## 숙박약관

호텔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 호텔을 이용하시는 고객여러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규칙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규칙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지켜주시지 못하실 때에는, 저희 호텔의 이용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규칙

1. 객실을 허가 없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복도 또는 객실 내에서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침대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 합니다.
4. 고성방가나 싸움 등의 행위, 그의 또는, 타인에서 혐오감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합니다.
5. 관내에 이하의 용품이나 물건은 가지고 들어 오실 수 없습니다.
  - (가)동물, 조류
  - (나)현저히 악취를 풍기는 물건
  - (다)현저히 양이 많은 물건
  - (라)화약이나 휘발유같은, 발화 혹은 인화하기 쉬운 물건
  - (마)적법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총포, 도검류
6. 관내 또는 객실 내에서는 도박이나 풍기를 해치는 행위를 금합니다.
7. 외부 손님을 객실 안으로 불러들여 객실내의 여러 설비,물품들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소 대신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관내 또는 객실내의 여러 비품, 물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객실 내의 비품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호텔 안의 다른 당소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11. 호텔의 건축물과 여러 설비에 이물질을 붙이거나,현상태를 변경하는 가공을 할 수 없습니다.
12. 호텔의 외관을 해치는 물품을 창에 걸 수 없습니다.
13. 호텔 안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광고물을 배부하거나 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14. 복도나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15. 호텔 밖에서 배달 음식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16. 이용금액이 30,000 엔을 넘는 경우, 호텔로부터 청구가 있을경우 지불하여 주십시오.
17. 예정숙박일수를 변경하는 경우, 프린트에 미리 연락하여 주십시오.
18. 예정숙박일수를 연장할 경우, 연장 이전에 계산하여 지불하여 주십시오.
19. 말기시는 세탁물, 클로크룸에 말기는 물건과 잃어버린 물건의 보관은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출발후 3개월까지 입니다.
20. 현금이나 그 외의 귀중품은 반드시 프린트에 맡겨주십시오. 말기시 물건 이외의 물품의 분실에 있어서는 저희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적용범위

- (제 1 조) 당 호텔이 숙박객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것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약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 되어진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한다.
2. 당 호텔이 법령 또는 습관에 반하는 범위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그 특약을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숙박계약의 신청

- (제 2 조) 당 호텔에 숙박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주어야만 한다.
- (1) 숙박자명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3) 숙박요금 (원칙으로서 별표 1 의 기본숙박료에 의한다.)
  -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2. 숙박 객이, 숙박 중에 전항 2호의 숙박일을 넘어서 숙박의 계속을 요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요청이 되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하고 처리한다.

### 숙박계약의 성립 등

- (제 3 항) 숙박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당 호텔이 승낙 하지 않았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숙박기간(3 일을 넘을때는 3 일간)의 기본숙박료를 한정해 당 호텔이 규정한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받는다.
  3. 예약금, 면서, 숙박객이 최저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숙박요금에 충당되고, 제 6 조 및 제 8 조의 규정을 적용할 사태가 생긴때에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해 요금 지불시에 반환한다.
  4. 제 2 항의 예약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일까지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숙박계약은 그 효과를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단,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는것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뜻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 한다.

### 예약금의 지불을 필요로하지 않는 특약

- (제 4 조) 전조제 2 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후 동항의 예약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는 것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 2 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당 각 예약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것으로 하고 취급한다.

###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 (제 5 조) 당 호텔은 다음 사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 (1) 숙박의 예약이, 그 약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
  -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이 여유가 없을 경우.
  - (3) 숙박 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구성원, 준구성원, 폭력단관계기업, 그 외의 반사회적세력일 경우
  - (5)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 (6)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으로서, 그 직원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 (7) 숙박에 관해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 (8)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전염병자인 것이 명확히 인정되어진 때.
  - (9) 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의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경우.
  - (10)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도둑등으로서, 다른 숙박자에 현저히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진때, 및,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히 피해를 끼치는 언동을 한때(각 도도부현조례에 의해)

###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 (제 6 조)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해서, 숙박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예약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함에 있어서,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별표 제 2 에 기재함에 있어서, 위약금을 청구하여 받는다. 단, 당호텔이 제 4 조제 1 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숙박객이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에 위약금 지불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 고지한 때에 한한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서 숙박당일의 오후 10 시(미리 도착예정시각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 시간경과한 시각)가 되어서도 도착하지 않은 때는, 그 숙박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약 되어진 것으로 간주해 처리한다.



## 숙박약관

### 당 호텔의 계약 해약권

- (제 7 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계약을 해약한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되어진 때, 또는 동행위를 한것으로 인정될 때.
  - (2) 숙박객이 전염병자인것이 명확하게 인정 되어진 때.
  - (3)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담을 요구할 때.
  - (4) 숙박객이, 폭력단, 폭력단구성원, 준구성원, 폭력단관계기업, 그 외 반사회적세력인 것이 인정 되어진 때.
  - (5) 천재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에 의해 숙박 불가능 할 때.
  - (6)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도둑등으로서, 다른 숙박객에 현저히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및,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 현저히 피해를 끼치는 인동을 한 때.(각 도도부현 조례에 의해)
  - (7) 침실에서 흡연을 하거나, 소방용설비에 장난을 치거나, 그 외 당 호텔이 정해놓은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예방상 필요한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에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약한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의 요금은 받을 수 없다.
3.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약한 때는, 손님 및 관계자등 제 3 자에 대해, 당 호텔은 일체의 배상책임의무를 지지않는다.

### 숙박의 등록

- (제 8 조)숙박 객은, 숙박당일, 당 호텔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등록 한다.
- (1) 숙박객의 이름,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이 있어서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년월일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 12 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등 통화를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것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객실의 사용시간

- (제 9 조)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가능한 시간은, 오후 3 시부터 다음날 아침 12 시까지로 한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착 및 출발일을 뺀,종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동항에서 정한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요금을 청구한다.
- (1) 초과 3 시간까지는, 기본숙박료의 30%
  - (2) 초과 3 시간이상은, 기본숙박료의 전액

### 이용규칙의 준수

- (제 10 조) 숙박객은 ,당 호텔 안에 있어서는, 당 호텔이 정해놓은 호텔안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른다.

### 영업시간

- (제 11 조) 당 호텔의 주요한 시설등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외의 설비등의 자세한 영업시간은 팜플렛, 각각의 장소에 게시, 각실내의 서비스디렉토리등에 안내한다.
- (1) 프런트, 캐서등 서비스 시간
    - ㄱ)통금 - 없음
    - ㄴ)프런트 서비스 - 24 시간
  - (2) 전항의 시간은, 필요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알린다.

### 요금의 지불

- (제 12 조) 숙박객이 지불해야하는 숙박요금등의 내역은, 별표 제 1 에 의한다.
- (1)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에는, 운임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수표, 숙박권, 신용카드등 이것을 대신해 얻는 방법에 의하며, 숙박객의 출발하는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때, 프런트에서 지불한다.
  - (2) 당 호텔이 숙박객에 객실을 제공하며, 사용이 가능하게 된 때,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숙박요금은 청구한다.

### 당 호텔의 책임

- (제 13 조) 당 호텔은, 숙박계약 및 이것에 관련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수들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 손해를 준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그것이 당 호텔이 책임져야하는 사유에 의한것이 아닌 때는, 배상하지 않는다.
- (2) 당 호텔은, 소방기관으로부터 적마크를 수령하고 있으나, 만일 화재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 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되지않은 때의 취급

- (제 14 조)당 호텔은, 숙박객과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숙박객에 이해를 구하고, 가능한한 동일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한다.
-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이 가능하지 않은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을 숙박객에 지불하고, 그 보상을 손해배상액에 충당한다. 단,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책임져야할 사유가 아닌때는,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

### 기탁물등의 취급

- (제 15 조)숙박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과 귀중품에 대해서는, 멸실, 훼손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빼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않은 때는, 당 호텔은 45 만엔을 한도로 해 손해를 배상한다.
- (2) 숙박객이 당 호텔안에 가지고 들어온 물품 또는 현금과 귀중품에 있어서,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경우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가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15 만엔을 한도로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제 16 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먼저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전에 당 호텔이 인지했을 때에 한해서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할때 인도한다.
- (2) 숙박객이 체크인하는 시간에, 숙박객이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놓고 떠났을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관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당 각소유자에 연락을 함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한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 또는 소유자가 관명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3 개월간 보관하며,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인도한다.
  - (3) 전 2 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책임은, 제 1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의해,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준한다.

### 주차의 책임

- (제 17 조)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의 키를 기탁의 여부에 상관없이, 당 호텔은, 장소의 제공에 있어서, 차량의 관리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는다. 단,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실을 준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맡는다.

### 숙박객의 책임

- (제 18 조)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때는, 당 각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한다.

### 별표 제 1

숙박요금등의 내역(제 2 조제 1 항 및 제 12 조제 1 항관계)

		내역
숙박객이 지불해야하는 총액	숙박요금	①기본숙박료(객실료)
	추가요금	②음식료 및 그 외의 이용요금
	세금	③소비세 ④숙박세(도도부현타지방세법에 의해)

### 별표 제 2

위약금(제 2 조제 2 항관계)

계약신청인수	해약해제의 통지를받은날	미입실	당일	전일	9 일전	20 일전
일반	14 명까지	100%	80%	20%		
	15 명~99 명까지	100%	80%	20%	10%	
	100 명	100%	100%	80%	20%	10%

- (주) 1. %는, 기본숙박료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 일본 (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3. 단체객(15 명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는 경우, 숙박의 10 일전(그날로부터 후에 신청을 책임지고 받은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에 있어서의 숙박인수의 10%(끝수가 나온경우에는 올림함)에 해당하는 인수에 있어서는, 위약금을 받지않습니다.